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31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조례의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당초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장학금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그 자녀변경

첨 부

-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로서 재능이”를 “ 및 그 자녀로서 재능은”으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와 같다)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및 그 자녀로서 재능은..... </p>			